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10.

강민국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9.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 (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2. 2.)

상정

－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2. 3.)

상정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 11.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11차 정무위원회 (2025.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민국의원)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음.

이에,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7조제10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정 명 호)

- 개정안은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청서 등을 거짓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하고,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동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신고) ①·② (생략)	제7조(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이 법, 「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행	개정안
<u><신설></u>	6.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u><신설></u>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u><신설></u>	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정보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②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에 한정), ③ 이 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 포함), ④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3항1)).

□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등 부적정한 상황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현행법상 신고 불수리 요건이 형식적 요건에 그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신고에 대해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개선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이행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를 추가하고, 신고의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와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진입규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방식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규정(제7조)은 2020년 3월 이 법의 개정으로 신설되었음.

- 당시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대상을 특정할 수 없었음.

- 이에 이 법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자를 특정한 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로 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²⁾

2) 정부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 그런데,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³⁾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목적의 진입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사항은 가급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법 기준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에 관한 사항이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2024년말에 기존 가상자산사업자(37개사) 중 대부분(33개사)의 갱신신고 신청기한이 도래하는 현실적인 입법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4.10.17. 기준)

구분	서비스명	법인명	신고수리일
가상 자산 거래 업자 (27)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2021.10.06.
	코빗	주식회사 코빗	2021.10.20.
	코인원	주식회사 코인원	2021.11.25.
	빗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2021.12.02.
	플라이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2021.12.01.
	지닥(GDAC)	주식회사 피어테크	2021.11.29.
	고팍스	주식회사 스트리미	2021.12.09.
	BTX	차일들리 주식회사	2021.12.09.
	프로비트	오션스 주식회사	2021.12.09.
	포블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2021.12.21.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288호) 검토보고”, 2019.8.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서비스명	법인명	신고수리일
	후오비코리아	후오비 주식회사	2021.12.21.
	코어닥스	(주)코어닥스	2021.12.17.
	플랫폼익스체인지	주식회사 플랫폼이엑스	2021.12.23.
	한빛코	주식회사 한빛코코리아	2021.12.23.
	비블록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2021.12.23.
	비트레이드	주식회사 블록체인컴퍼니	2021.12.23.
	오케이비트(OK-BIT)	주식회사 포리스닥스코리아 리미티드	2021.12.30.
	빗크몬	주식회사 골든퓨처스	2021.12.30.
	프라뱅	주식회사 프라뱅	2021.12.30.
	코인엔코인	(주)코엔코코리아	2021.12.30.
	보라비트	주식회사 뱅코	2021.12.30.
	캐서레스트	주식회사 뉴링크	2022.01.04.
	텐앤텐	(주)텐앤텐	2022.01.04.
	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2022.01.04.
	오아시스거래소	(주)가디언홀딩스	2022.02.10.
	큐비트	큐비트(주)	2022.02.10.
	코인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2022.09.01.
기타 지갑 보관 · 관리 업자 (10)	코다(KODA)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2021.12.17.
	케이닥(KDAC)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2021.12.17.
	오하이월렛	(주)헥슬란트	2021.12.30.
	마이키피월렛	(주)씨피랩스	2022.01.04.
	하이퍼리즘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2022.01.07.
	카르도	(주)카르도	2022.02.10.
	텔리오	(주)텔리오	2022.02.12.
	페이코인(Paycoin)	PayProtocol AG	2022.04.22.
	베이직리서치	주식회사 마인드소프트	2022.06.27.
	인피닛블록	(주)인피닛블록	2023.08.07.

주1 2024년내 갱신신고 신청 필요 사업자 음영 표시(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신청 필요)

주2 기준일 현재 업비트(‘24.8.21.), 코빗(‘24.9.4.), 코인원(‘24.10.10.), 빗썸(‘24.10.17.), 플라이빗(‘24.10.16.), 지닥(‘24.10.14.) 등 6개 사업자가 갱신신고 신청을 하여 심사 중임.

(자료: 금융위원회)

- ☐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불수리 대상에

추가하려는 개정안 제7조제3항제5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토큰증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와 토큰증권 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7조제10항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⁵⁾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진입규제체계가 신고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이 적절한지 검

4) 참고로, 현재 토큰증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1,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2,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2024.10.25.)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토가 필요하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조건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